

1. 개정이유

병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에 대하여 조기진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급인원이 소수인 부대의 조기진급자 선발과 전투부대 복무활성화를 위한 조기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진급인원이 소수인 부대의 조기진급 선발 여건 보장 및 전투부대 복무 병의 조기진급 비율 상향(안 제32조)

- 1)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 단축적용하여 진급을 선발하는 인원을 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따라 진급 인원이 소수로 선발할 수 없는 경우 1명은 선발할 수 있도록 함.
- 2)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힘든 전투부대 병의 조기진급 비율을 현행 10분의 1에서 10분의 2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.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3항 단서 중 “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”를 “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명 이상 선발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제3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적용하는 진급인원은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)	제32조(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)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 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의 진급인원은 해 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 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	③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명 이상 선발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④제3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<u>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</u> <u>서 복무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</u> <u>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적</u> <u>용하는 진급인원은 해당 계급</u> <u>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2에 해</u> <u>당하는 인원으로 선발할 수 있</u> <u>다.</u>